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27일, 윤호중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5년 2월 28일(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5.09.0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

론, 소위원회부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09.) 상정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16.) 상정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2.) 상정

제4차 경제재정소위원회(25.09.29.) 상정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25.11.17.) 후 「국

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2025.11.19.)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5.11.20.) 상정, 공청회 개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6.03.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호중의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적자본 지수는 167개국 중 107위에 그치는 등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중대한 현안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연대경제는 위기 완화에 기여한 바 있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UN)은 2023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올해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등 사회연대경제가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사회혁신에 크게 기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UN) 등 국제기구들 역시 사회연대경제 관련 제도 설계와 정책 수립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으며, 프랑스·스페인 등 여러 국가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왔으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규모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체계가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법과의 중복·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법률안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의 수립·시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제정안 등 9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사회연대경제는 특정 이념과 결부된 측면이 있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추세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관한 개별부처의 관리·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정부 의존을 심화시켜 자생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됨.
- 사회연대경제는 유럽의 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

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에 부합하고, 불평등·양극화 등 시장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행정안전부가 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소요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소외된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